

영화 <소수의견>을 통해 본 제소전화해와 법관기피신청

지방대학교 출신 국선변호사 윤진원(윤계상 분)은 강제철거 현장에서 열여섯 살 아들을 잃고, 경찰을 죽인 현행범으로 체포된 철거민 박재호(이경영 분)의 변론을 맡게 됩니다. 조사를 하던 중 강제철거 현장에서 소송을 진행하려던 시행사와 상대방인 철거민 사이의 제소전화해를 유도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. 과연 여기서 제소전화해란 무엇일까요?



<제소전화해>

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 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합니다.

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.

따라서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에 따라 화해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.

또한 제소전화해는 재산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중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됩니다(대법원 1988. 1. 19. 선고 85다카1792 판결). 하지만 영화에서 철거민들은 제소전화해를 하지 않았고 결국 박재호의 아들과 경찰 한 명이 경찰작전 중 사망합니다.

결국 법정에서 서게 된 피고인 박재호와 그의 변호인 윤진원, 담당 검사와 판사가 친구인 사실을 듣고 난감해하며 법관기피신청을 고려하는데 여기서 법관의 기피란 무엇일까요?



〈법관의 기피〉

형사소송법 제17조(제척의 원인)

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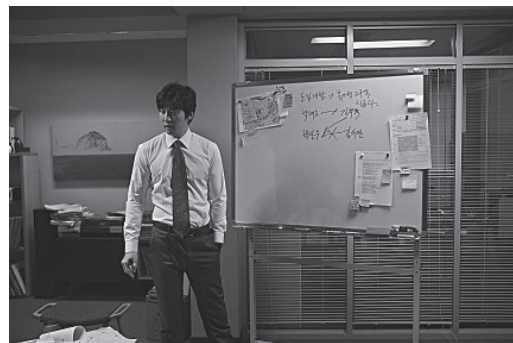
1. 법관이 피해자인 때
2.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
3.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, 후견감독인인 때
4.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, 감정인,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
5.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, 변호인, 보조인으로 된 때
6.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
7.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, 심리에 관여한 때

형사소송법 제18조(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)

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

1. 법관이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
2.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

②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





이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 법관은 재판에서 배제됩니다. 하지만 윤진원은 기피신청을 하지않고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.

지금까지 영화 <소수의견>에 나온 제소전 화해와 법관의 기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
(출처/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이야기)